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센티브 시행지침

제정 : 2012. 4. 1.

1차 개정(부분개정) : 2014. 1. 1.

2차 개정(부분개정) : 2017. 1. 1.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당사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쟁관련법률의 준수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 소속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적용 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쟁관련 법률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경쟁당국에서 소관하는 모든 법률을 말한다.

나. 공정거래 주관부서라 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인센티브의 부여의 원칙】

당사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를 기업문화로 정착하는 데에 기여한 조직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인센티브의 종류】

수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여되는 인센티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
2. 복리 포인트
3. 대표이사 수여 표창
4.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주관부서의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한 각종 시상품

제6조 【인센티브 수여 대상자 선정 기준】

① 인센티브 수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공정거래 교육 우수 수료자
2.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제도개선 및 신규프로그램 등 제안 우수자
3. 기타 공정거래 주관부서가 주관하는 각종 공정거래활동 참여 우수자
4. 공정거래 뉴스레터 퀴즈응모자 중 당첨자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로 인한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의 효과가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대상금액의 2%
2.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로 인한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의 효과가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100만원
3.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로 인한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의 효과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4.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로 인한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의 효과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③ 본조 제2항 각호의 신고효과성은 자율준수위원회 구성원의 의결을 통해 산정한다.

【부칙】

1. 본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지침은 인트라넷 CP커뮤니티에 게시하여 당사의 전 임직원과 공유한다.